

Advance Unedited VersionDistr.: General
6 April 2020

Original: English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관련 성명****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 성명*****I. 서문**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은 공중보건제도를 위협적으로 압도하며 전세계적으로 경제, 사회, 안보, 교육, 식량 생산 등 삶의 면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전선에서 치료에 힘쓴 의사와 간호사를 포함하여 이미 수만 명이 생명을 잃었다.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하여 봉쇄 등의 제한 조치를 취하면서 일자리가 사라지고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은 여러 국가에서 학교가 문을 닫고, 사람들이 모여 종교 활동, 결혼식, 장례식 등 중요한 문화 및 지역사회 활동을 할 수 없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본 성명을 통해 우선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로 사망한 이들과 그 가족뿐 아니라 희생자가 속한 지역사회에도 조의를 표한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향유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가장 취약한 집단의 보건권이 심각하게 침해된다. 아래 상세히 언급하겠으나, 국가는 이러한 영향을 방지하거나, 최소한 완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국가가 인권의 틀 안에서 행동하지 않을 경우 국가 차원의 조치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침해하거나 가장 소외된 이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위험이 분명히 존재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19 에 대응하고자 조치를 취할 때 누구도 소외되어서는 안된다.¹ 이러한 배경 하에 위원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미치는 주요 영향을 조명하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규약”)에 의거한 국가의 의무를 다하는 방향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19 에 대응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자 본 성명을 발표한다.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는 본 성명을 2020년 4월 6일 채택했다.

¹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가 앞서 발표한 별도 성명(E/C.12/2019/1) 참조. 해당 성명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에 대한 것으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할 것을 약속한다.

II.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미치는 영향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은 모든 인권의 불가분성과 상호연관성의 중요성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금번 대유행은 기본적으로 국제 보건 위협을 가한다. 하지만 국가가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 일부가 이동의 자유를 비롯한 기타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시민적·정치적 권리 향유에 다차원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국가가 이번 대유행에 대응하고자 취하는 조치는 반드시 인권 보호를 위하여 합당한 조치로 비례성을 고려해야 한다.
4. 수십년 간 공중 보건 및 복지 제도에 투자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탓에 보건 및 복지 제도가 약화됐고, 특히 2007-2008 년 글로벌 금융 위기로 더욱 약화 추세가 가속화됐다.² 그 결과 금번 강력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에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5. 현 위기는 빈곤하며 소외된 계층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친다. 기저 질환이 있고 면역 체계가 부실한 노령층이 특히 취약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에 감염될 경우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또한 주거복지시설 거주자 또는 공동 거주 시설 거주자, 구급 시설 내 수감자 및 구급자, 적절한 물, 비누 또는 세정제 접근이 어려운 임시 시설 및 기타 지역에 있는 집단 등은 감염 위험이 더 크다. 배달 노동자, 폐기물 수거 노동자, 육체 노동자 및 농업 부문 노동자 등 특정 부류의 노동자가 감염의 위험이 더 크다. 이들 업무의 특성상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재택 근무를 하는 이점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의료종사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에 대응하는 최전선에서 영웅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개인 보호 장비 및 의복이 적절하게 또는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감염되고 있다. 일부 국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을 막기 위해 취한 조치로 인하여 경제적인 타격을 심각하게 받는 집단이 있다. 독립형 일자리 경제(gig economy) 또는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는 불안정한 노동자 집단³과 여러 국가의 가사 노동자를 포함하여 인원 삭감 또는 임금 및 복지 혜택 삭감에 직면한 노동자 집단이 포함된다. 비공식 무역 업자와 일부 소규모 사업은 거래 또는 사업을 더이상 이어갈 수 없는 상황으로, 자신 및 부양 가족의 심각한 경제적 불안정성이 초래된다.
6. 공공재와 복지 제도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전세계 소득 및 부의 불평등도 심화됐다. 빈곤층은 앞서 언급된 재화 및 용역을 민간 시장에서 구매할 여력이 되지 않고, 격리, 외출금지 및 국내외 악화된 경제 상황으로 말미암아 경제적 부담을 과도하게 진다.
7. 학교, 기술 전문 대학 및 고등 교육 기관이 폐쇄된 국가에서 온라인으로 강의와 학습을 이어가려고 노력 중이다. 교육 기관 폐쇄가 교육권에 미치는 영향을 경감하는데 중요한 조치이다. 다만 학습자의 빈부에 따라 비용 지불이 가능한 인터넷 사용이나 컴퓨터,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등 장비 보유 여부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교육 불평등이 심화될 위험 또한 상존한다.
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은 젠더 불평등 또한 심화시킨다. 여러 사회에서 여전히 젠더 고정관념과 젠더별 역할 개념이 공고하게 박혀있기 때문에, 여성 구성원이 주로 가정 내 아동과 질병이 있거나 노령인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일을 과도하게 맡기 때문이다. 가족이 외출금지 또는 격리 상태에 놓이면서 여성이 가정 폭력에 더욱 취약한 상태에 놓일 수 있고, 가정 폭력을 당할 때 도움을 청하는 것도 제한적일 수 있다.

²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 위원장이 2020 년 3 월 16 일 당사국에 보낸 서한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가 공공 부채, 긴축 정책,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대하여 발표한 성명(E/C.12/2016/1) 참조.

³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일반 논평 참조: 노동권(제 18 호)(2005), 사회 보장예의 권리(제 19 호)(2007),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 조건예의 권리(제 23 호)(2016).

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 동안 토착민, 난민, 망명 신청자 및 분쟁 국가 또는 분쟁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이 더욱 취약성이 높다. 대다수가 물, 비누 또는 세정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 시설, 보건 의료 서비스 및 정보 접근이 어렵다. 이들은 만성 질병 및 기저 질환 보유 비율이 높은 경우가 많아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로 인해 치명적인 합병증을 앓게 될 위험 또한 높다.

III. 권고

10. 금번 위기 상황 속에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규약에 명시된 인권을 보호하고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국가는 긴급하게 여러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 대응은 가용 가능한 최고 수준의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공중 보건을 보호해야 한다.⁴

11.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규약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때 해당 규약 제 4 조에 명시된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핵심만 요약하자면, 해당 조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가 초래한 공중 보건 위기 대응에 필수적인 조치로만 이뤄져야 하며, 합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비례성을 고려해야 한다. 당사국이 대유행에 대응하고자 이행한 긴급 조치와 부여한 권한은 오용해서는 안되며, 공중 보건 보호에 불필요해서는 즉시 해제되어야 한다.

12. 대유행 대응에 있어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⁵은 반드시 존중 및 보호받아야 하며,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규약이 부여하는 최소핵심 의무를 우선시 해야 한다.⁶ 작금의 어려운 상황에서 사법 접근성 및 효과적인 사법 구제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보호에 핵심 요소로, 결코 사치가 아니다. 특히 가장 취약하고 소외된 계층에게 중요하다. 따라서, 가령 법집행담당관이 가정 폭력 건에 대응하고, 가정 폭력 긴급 전화가 운영되며, 가정 폭력에 놓인 여성 및 아동이 사법 제도 및 사법 구제에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13. 국가가 적절한 규제 조치를 취하여 전인구를 대상으로 공공 및 민간 부문 보건 의료 자원이 활용되고 공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 위기에 대한 보건 의료 대응을 전방위적으로 조율하기 위한 것이다.⁷ 보건 의료 종사자는 최전선에서 위기에 대응하는만큼 반드시 적합한 보호 의복 및 장비를 제공받아야 한다. 의사결정권자는 보건 의료 종사자와 반드시 상의하고, 이들의 조언을 참작해야 한다. 보건 의료 종사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와 같은 질병 전파의 조기 경보 신호를 제공하고, 효과적인 방지 및 치료 방안을 권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14. 당사국은 보건권을 포함하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완전하게 실현하도록 가용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의무가 있다. 대유행과 이에 대응하려는 조치가 가장 소외된 계층에게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는 가장 평등한 방식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에 대응하도록 필요 자원을 동원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소외된 계층에게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소외된 계층이 필요로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충족시키도록 자원을 할당해야 한다.

15. 당사국 모두는 국제 협력을 통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맞춤형 특별 조치를 긴급하게 취하여 노인, 장애인, 난민 및 분쟁 지역 주민 등 취약 집단뿐 아니라 구조적으로 차별받고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지역사회 및 집단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으로부터 보호하거나 그 영향을 완화하도록 해야 한다. 다음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해야 한다. 물, 비누 및 세정제가 없는 지역사회에

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 일반 논평 참조: 과학(제 25 호)(2020).

⁵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규약 서문 참조.

⁶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 일반 논평 참조: 당사국 의무의 본질(제 3 호)(1990) 문단 10-11.

⁷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 일반 논평 참조: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에 대한 권리(제 14 호)(2000).

이를 제공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포함하여 모든 노동자의 일자리, 임금 및 혜택을 보호하는 맞춤형 제도를 운영하며, 대유행 동안 집에서 퇴거시키거나 담보부사채 유질처분을 할 수 없도록 일시 중지 조치를 취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 모두에게 식량 및 소득 안정을 담보할 수 있는 사회 구제 및 임금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로마족뿐 아니라 토착민 등 취약한 소수 집단의 건강과 생계를 보호할 수 있는 특별 맞춤형 조치를 취하며, 모두가 지불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등하게 교육용 인터넷 접근을 보장한다.

16. 노동자는 예외없이 직장에서 전염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국가는 적절한 규제 조치를 취하여 고용주가 공중 보건 모범 사례 기준에 따라 전염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해당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노동자에게 근무를 강제할 수 없으며, 노동자는 적절한 보호 조치가 없을 시에 근무를 거부하는 데 대한 징계 또는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 더불어 국가는 대유행 동안 노동자의 일자리, 연금 및 기타 사회 보장을 보호하고, 임금 보조금을 지급하고 세금을 감면하며 보충적인 사회 보장 및 임금 보호 제도를 마련하는 등 대유행병의 경제적인 여파를 완화하도록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한다.⁸

17. 식량, 위생 용품 및 기타 필수 의약품 및 물품으로 부당 이득을 취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조치 또한 취해야 한다. 대유행 동안 해당 물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모두 면제하고, 필수 식량 및 위생 용품 비용을 보조하여 빈곤층도 해당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권고한다.

1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에 대한 정확하고 접근 가능한 정보는 바이러스 전파 위험을 낮추고 잘못된 정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감염된 이들을 포함하여 취약 집단에 낙인을 찍거나 해를 가하는 행동을 할 위험을 경감시키는데에도 도움이 된다. 이러한 정보는 접근 가능한 형태로 모든 지역 및 토착 언어로 정기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특히 상대적으로 빈곤한 지역사회 및 지역에 집중하여 학생 모두에게 비용 지불이 가능한 수준의 인터넷 접근 및 필수적인 기술 장비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대유행으로 인해 학교 및 고등 교육 기관이 폐쇄된 동안 동등하게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글로벌 위기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규약에 명시된 핵심 원칙인 국제 지원 및 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준다.⁹ 국제 지원 및 협력은 연구, 의료 장비 및 물자, 바이러스 대응 모범 사례 등을 공유하며, 위기의 경제 및 사회적 여파를 줄이도록 조율하고, 국가 모두의 공동 노력으로 효과적이고 동등한 경제 회복을 보장토록 하는 등을 포함한다. 빈곤 및 취약 집단의 필요뿐 아니라, 최저개발국가, 분쟁 국가 및 분쟁 후 상황에 놓인 국가 등 취약 국가의 필요를 중심으로 이러한 국제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0. 당사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응하는 국제적 노력에 있어 영토를 초월하는 의무를 가진다. 특히 선진국은 의료 장비 수출을 제한하는 등의 결정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제한 조치는 본 대유행의 세계 최빈곤 피해자가 중요 장비에 접근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더욱이 당사국은 일방적인 국경 조치를 취해 주식 및 보건 장비를 중심으로 필수 핵심 물품의 공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국내 공급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취하는 제한 조치는 반드시 비례성을 따져야 하며, 타국의 긴급한 필요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21. 당사국은 또한 국제금융기관에서 행사할 수 있는 투표권을 발휘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에 대응하는 데 있어 개발도상국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가령 개발도상국에 다른 방식의 부채 청산 메커니즘을 제공할 수 있다. 당사국은 또한 적용 가능한 지적 재산권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는 등 조정을 통해 진단, 의약품 및 백신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된 과학 개발 성과의 혜택을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규약에 따른 노동자 권리 보호와 관련하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 일반논평 제 18, 19, 23 호를 참조.

⁹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규약 제 2(1), 11, 15 조 참조.

22. 경제 및 금융 부문 일방 제재 조치는 보건 제도를 약화시키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 특히 의료 장비 및 물품 구매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제재 조치를 해제하여 제재 조치에 영향을 받는 국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필요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¹⁰

23. 질병 대유행은 국경을 초월하는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 과학에 근거한 국제 협력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바이러스와 병원체는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든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 지역 유행병이 빠르게 대유행으로 번지고,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해당 분야에서 세계보건기구의 역할이 중요하며, 세계보건기구가 역할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질병 대유행에 대응하는 데 국내 조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는 국제 협력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잠재적 병원체와 관련된 과학 정보를 공유하는 등 국제 협력이 강화될 때 국가 및 국제기구, 특히 세계보건기구가 질병 대유행 대응에 더욱 잘 준비할 수 있다. 또한 국제협력의 일환으로 국가가 대유행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 신종 유행병 정보를 시의적절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공유하여, 조기 경보 메커니즘 또한 개선할 수 있다. 이 경우 최고 수준의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조기 개입이 가능한데, 유행병을 통제하고, 대유행으로 번지지 않도록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어떤 질병이 대유행으로 번진 단계라면, 최고 수준의 과학 지식과 그 적용을 의료 부문을 중심으로 공유하는 것이 질병의 여파를 완화하고 효과적인 치료와 백신 발견을 가속화할 수 있다. 더하여 대유행이 지나고 난 후 교훈을 얻고 향후 또 다른 대유행에 더욱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과학 연구를 독려해야 한다.

2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공중 보건 제도, 포괄 사회 복지 제도, 양질의 일자리, 주거, 식량, 물 및 위생 제도, 젠더 평등 도모 목적의 제도 등에 적절한 투자를 하는 것이 얼마나 유의미한 역할을 하는지 보여준다. 전세계 질병 대유행에 대응하고, 국내적으로, 또한 국가 간 존재하는 뿌리깊은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포함하여 서로 교차점이 존재하는 다차원의 불평등을 뿌리뽑는 데 이러한 투자가 핵심적이다.¹¹

25. 마지막으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당사국 모두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응하고자 예외적으로 자원을 동원한 것을 시발점으로 향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규약에 명시된 권리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장기적 안목으로 자원을 활용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통해 세계인권선언이 이상으로 제시한 “인간이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계의 도래”를 달성하는 기반을 닦을 수 있다.¹² 국내외 협력과 연대를 도모하는 메커니즘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실현에 필요한 기관과 제도에 실질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세계가 향후 질병 대유행과 재난에 더욱 잘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규약에 명시된 여러 위임권한을 수행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이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살필 것이다.

¹⁰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 일반논평 참조: 경제 제재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관계(제 8 호)(1997).

¹¹ 지속가능개발목표 10 참조.

¹² 이러한 약속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규약 서문에서도 언급된다.